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05호 2010. 11. 16(화)

포항시보

◀ 조 레 ▶

-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015호) 2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016호) 11
-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7호) 24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8호) 28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9호)..... 37

◀ 입법예고 ▶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0-979호) 41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96호) 49
- 포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97호) 62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0-99호) 64

회								
람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1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1015호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속한 세계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가 선진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

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글로벌 포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함

-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함

제3조(기본방향) 시의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1. 국제항만 및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물류 중심도시 지향
- 2.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 5.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등 선진일류도시 조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포항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전략
- 3. 지방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유치 방안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방안
 6. 외자유치 촉진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7. 외국인 정주권 확보 및 친근한 도시환경 조성
 8.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도입으로 선진일류시민 육성 방안
 9. 국제제도 정비 및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방안
 10. 국제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강화 방안
 11.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12.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등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제9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① 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자문대사 및 해외홍보 자문대사 위촉·운영) ① 시장은 국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대외통상 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항시 명예자문대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해외 마케팅 추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거주 동포 또는 외국인을 해외홍보 자문대사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자문대사 및 해외홍보 자문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국내·외 현지 자문활동 등의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협력민간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교류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센터) ①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연구·기획
2. 국제행사·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의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국제화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민법」 제 32조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교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 등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6조(자매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로 지정·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우리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시장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는 물론 해외통상을 증진하고 선린·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외국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8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우호증진 가능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 ②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의회동의)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성립 등) ① 자매결연 등은 쌍방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도시를 방문 할 경우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서명한다.

제22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의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제24조(설치 등)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국제통상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추진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해외통상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개발 및 민간외교 활동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제교류 전문가와 국제교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때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6.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1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간사)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는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3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회의결과의 처리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밖의 활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는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교류 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제협력민간협의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은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1. 제정이유

-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심도시, 세계일류 선진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기반 구축과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안 제3조)
- 나.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 자매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들과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안 제9조)
- 라.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안 14조)
- 마.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을 위한 외국 도시들과 자매 결연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바.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1016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포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표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

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4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 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text{12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

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1. 개정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및 방법·절차 신설(안 제2조)
-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신설
- 다.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안 제19조)
- 라.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안 제20조)
 - ‘강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마. 임신공무원 건강검진을 위해 매월 1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
- 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
- 사.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4조)
- 아. 그 밖에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1017호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포항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소재지
포은도서관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
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함
2. “열람자료” 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함
3. “관외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함

- 4 . “도서관시설” 이라 함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서관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u> 2. <u>“열람자료” 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u> 3. <u>“관외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u> 4. <u>“도서관시설” 이라 함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u> 	<p><u>제2조(명칭 등) ① 포항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은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 북구 틱수동 35-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암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잠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오천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석곡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td> </tr> </tbody> </table> <p>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서관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함</u> 2. <u>“열람자료” 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함</u> 3. <u>“관외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함</u> 4. <u>“도서관시설” 이라 함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함</u> 	명칭	소재지	포은도서관	포항시 북구 틱수동 35-19	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	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
명칭	소재지												
포은도서관	포항시 북구 틱수동 35-19												
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												
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												

1. 개정이유

동해석곡도서관 개관 및 도서정보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도서관이 5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포은도서관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
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박승호

2010년 11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1018호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전시실 운영) ① 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 및 초현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중 “설날·추석연휴 다음날” 을 “설·추석명절 당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6월 ~ 9월 : 10:00부터 19:00까지

2. 10월 ~ 다음해 5월 : 10:00부터 18:00까지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제2항 중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를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7세” 를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월 ~ 9월 : 10:00부터 19:00까지

2. 10월 ~ 다음해 5월 : 10:00부터 18:00까지

제14조제2항 중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를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 를 “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를 “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의” 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를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항시의회 의원

제28조 본문 중 “심의·자문한다.” 를 “심의한다.” 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중 “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 를 “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 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장에게” 를 “시립미술관장에게” 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립미술관 대관료(제16조 관련)

구분	기준	단위	단가	비고
전시실	1일(8시간)	m ²	240	○ 1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
부속시설 (세미나실 등)	1회(4시간)	회	50,000	
냉난방	대관시설 사용료의 20%			
방송영상	대관시설 사용료의 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명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전시실 운영)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u>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별관전시실 및 특별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별관전시실·특별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u></p> <p>제3조(개관 및 휴관) (생략)</p> <p>1. 1월 1일, <u>설날·추석연휴 다음날</u>, 매주 월요일</p> <p>2. (생략)</p> <p>제4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u>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명 :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시립미술관</p> <p>.....</p> <p>.....</p> <p>.....</p> <p>.....</p> <p>제2조(전시실 운영) ① 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u>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 및 초헌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 할 수 있다.</u></p> <p>제3조(개관 및 휴관) (현행과 같음)</p> <p>1. <u>설·추석명절 당일</u>.....</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람시간) ①</p> <p>.....(삭제)</p>

현 행	개 정
<p>1. <u>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22:00까지</u></p> <p>2. <u>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21:00까지</u></p> <p>② (생략)</p>	<p>1. <u>6월~9월 : 10:00부터 19:00까지</u></p> <p>2. <u>10월~다음해 5월 : 10:00부터 18:00까지</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관람의 금지) (생략)</p> <p>1. <u>정신이상자</u></p> <p>2. <u>술에 취한자</u></p> <p>3. ~ 4. (생략)</p>	<p>제5조(관람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1. <u>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u></p> <p>2. (삭제)</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관람료)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u>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제7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u>..</p> <p>.....</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무료관람) ① (생략)</p> <p>1. (생략)</p> <p>2. <u>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u></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무료관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호자를 동반한 7세.....</u></p> <p>.....</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시간) ① (생략)</p> <p>1. <u>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22:00까지</u></p> <p>2. <u>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21:00까지</u></p>	<p>제13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1. <u>6월~9월 : 10:00부터 19:00까지</u></p> <p>2. <u>10월~다음해 5월 : 10:00부터 18:00까지</u></p>

현행	개정
<p>② ~ ③ (생략)</p> <p>제14조(대관허가 신청 등)</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u>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 사용·수익 허가는 <u>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대관허가의 제한) (생략)</p> <p>1. ~ 3. (생략)</p> <p>4. 운영위원회의 대관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p> <p>제25조(소장작품 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가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u>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이하 “위원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대관허가 신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u>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p> <p>.....<u>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대관허가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u>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u>....</p> <p>.....</p> <p>제25조(소장작품 기증) ①<u>시립미술관 작품평가위원회</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설치)<u>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u>.....</p>

현 행	개 정
<p>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p>
<p>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생략) 2.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 4.(생략) ② ~ ③ (생략)</p>	<p>제2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포항시의회 의원 3. ~ 4.(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 5. (생략)</p>	<p>제28조(위원회 기능)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p>
<p>제3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는 미술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p>	<p>제33조(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 ①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 ② 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p>

현행	개정
<p>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④ ~ ⑦ (생략)</p> <p>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포항시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p>	<p>.....</p> <p>③ 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34조(권한의 위임) 시립미술관장에게.....</p>

- 1. 개정이유**
- 2010년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술관 명칭 변경 및 관람객 입장 시간 분석을 통한 관람시간 조정
- 2. 주요내용**
- “포항시립미술관” 을 “시립미술관” 으로 변경
 - 전시실 명칭변경 및 관람시간 조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1019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① 영 제5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1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16 제2호 아목 (2)중 “별표 8” 을 “별표 10”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 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규정 따라.....</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1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p>【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5호관련)</p> <p>1. (생 략)</p> <p>2. (생 략) 가.~ 사. (생 략) 아. (생 략) (1)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 (5) (생 략) 자.~ 거. (생 략)</p>	<p>【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5호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10..... (3) ~ (5) (현행과 같음) 자.~ 거. (현행과 같음)</p>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면 연접제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규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연접제한을 완화하고,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안 18조)
 - 나.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별표16】)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979호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16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 하천 점·사용료 고액납부자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을 두어 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작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1/100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별표1)

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규정 마련
(안 제4조제2항)

3.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 22조
- 「경상북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제5조, 【별표 1】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재난안전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 우편번호 790-722, 전화 054-270-3543, FAX 054-270-3530.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
용료등”이라 한다)”를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점용료등은”을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당해년도”를 “해당연
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당해년도 3월내에”를 “해당 연도 3
개월 내에”로 한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
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와 토석”을 “다만, 토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 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에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 ²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에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시지가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하천 정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모래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u>점용료등</u>”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소하천 정비법</u>」 제22조제5항에 따라.....<u>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u>.....</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u>점용료등</u>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만 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점용료등은 <u>회계년도</u>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u>당해년도</u>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p> <p>③ <u>법</u>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u>당해년도</u>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u>소하천 사용료</u>(이하 “<u>점용료등</u>”이라 한다)는</p> <p>② <u>회계년도</u>.....<u>해당년도</u>.....</p> <p>③ 「<u>소하천 정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u>해당년도</u>.....</p>

현 행	개 정
<p>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u>회계년도별로</u>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1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u>해당연도 3월 내에</u> 징수한다.</p> <p>② <u>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u>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③ <u>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른다.</u></p>	<p>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회계연도..... <u>해당연도 3개월 내에</u>.....</p> <p>② <u>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u>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u></p>
<p>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u>기타의 경우</u>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 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징수) ①<u>그 밖의</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등(부당이득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u>10%이상</u>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u>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와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u>10퍼센트 이상</u> <u>해당연도</u>..... <u>다만, 토석</u>..... </p>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96호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1번지 일원의 동해리조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골프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11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동해리조트 개발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동해 리조트	관광. 휴양형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1번지 일원	147,910	증 3,948	151,858	경북고시 제1992-258호 (1992.8.17) 영일군고시 제8호 (1992.8.2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8	동해리조트	A=147,910m ² → 151,858m ² (증 3,948)	기존 동해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한 결과 부분적인 구역 변경이 불가피함.

3.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13	보경관광단지 → 동해리조트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1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147,910	증 3,948	151,858	경북고시 제1992-258호 (1992.8.17) 영일군고시 제8호 (1992.8.21)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7-13	보경관광단지 → 동해리조트	A=147,910m ² → 151,858m ² (증 3,948)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시설용지계획 결정(변경)

구분	가구번호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147,910	100.00	151,858	100.00	
변경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45,061	30.48	69,538	45.79	
변경	②	공공시설용지	30,961	20.93	26,445	17.41	
변경	③	녹지용지	71,888	48.59	55,875	36.80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합계	147,910	151,858	증 3,948		151,858	
변경	① 관광휴양시설	45,061	69,538	증 24,477		69,538	
폐지	①-1 유희시설	27,300	-	감 27,300	송라면 화진리 산3-1	-	
신설	①-1 휴양·문화시설	-	17,210	증 17,210	송라면 화진리 산3-29	17,210	
변경	①-2 체육시설	3,500	2,863	감 637	송라면 화진리 산3-1→29	2,863	
변경	①-3 숙박시설	14,261	42,014	증 27,753		42,014	
변경	①-3-1 숙박(A형)	3,998	4,081	증 83	송라면 화진리 산2-2→5	4,081	
폐지	①-3-2 숙박(B형)	1,725	-	감 1,725	송라면 화진리 산3-1	-	

구분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적(㎡)	
신설	㉠-3-2 숙박(B형)	-	7,611	증 7,611	송라면 화진리 산2-5	7,611	
폐지	㉠-3-3 숙박(C형)	559	-	감 559	송라면 화진리 산2-2	-	
신설	㉠-3-3(1)숙박(C형)	-	1,215	증 1,215	송라면 화진리 산2-5	1,215	
신설	㉠-3-3(2)숙박(C형)	-	1,247	증 1,247	송라면 화진리 산2-5	1,247	
폐지	㉠-3-4 숙박(D형)	142	-	감 142	송라면 화진리 산2-2	-	
신설	㉠-3-4(1)숙박(D형)	-	1,236	증 1,236	송라면 화진리 산2-5	1,236	
신설	㉠-3-4(2)숙박(D형)	-	979	증 979	송라면 화진리 산3-3	979	
폐지	㉠-3-5 숙박(E형)	1,213	-	감 1,213	송라면 화진리 산3-1	-	
신설	㉠-3-5(1)숙박(E형)	-	3,990	증 3,990	송라면 화진리 산3-29	3,990	
신설	㉠-3-5(2)숙박(E형)	-	3,138	증 3,138	송라면 화진리 산3-29	3,138	
폐지	㉠-3-6 숙박(F형)	6,624	-	감 6,624	송라면 화진리 산3-1	-	
신설	㉠-3-6(1)숙박(F형)	-	4,369	증 4,369	송라면 화진리 산3-29	4,369	
신설	㉠-3-6(2)숙박(F형)	-	2,609	증 2,609	송라면 화진리 산3-29	2,609	
신설	㉠-3-6(3)숙박(F형)	-	3,444	증 3,444	송라면 화진리 산3-29	3,444	
신설	㉠-3-7 숙박(G형)	-	3,974	증 3,974	송라면 화진리 산3-29	3,974	
신설	㉠-3-8 숙박(H형)	-	4,121	증 4,121	송라면 화진리 산3-29	4,121	
신설	㉠-4 편익시설	-	7,451	증 7,451		7,451	

구분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적(㎡)	
신설	①-4-1 편의시설1	-	3,115	증 3,115	송라면 화진리 산3-29	3,115	
신설	①-4-2 편의시설2	-	4,240	증 4,240	송라면 화진리 산3-29	4,240	
신설	①-4-3 관리실1	-	50	증 50	송라면 화진리 산2-5	50	
신설	①-4-4 관리실2	-	46	증 46	송라면 화진리 산2-5	46	
변경	② 공공시설	30,961	26,445	감 4,516		26,445	
변경	②-1 도 로	15,781	19,904	증 4,123	송라면 화진리 산3-2	19,904	
변경	②-2 주차장	14,680	5,843	감 8,837	송라면 화진리 산3-1→2-5	5,843	
신설	②-2-1 주차장1	-	1,400	증 1,400	송라면 화진리 산2-5	1,400	
신설	②-2-2 주차장2	-	584	증 584	송라면 화진리 산3-29	584	
신설	②-2-2-3 주차장3	-	739	증 739	송라면 화진리 산3-29	739	
신설	②-2-2-4 주차장4	-	3,120	증 3,120	송라면 화진리 산3-29	3,120	
변경	②-3 배수지	250	352	증 102	송라면 화진리 산2-2→3-29	352	
변경	②-4 오수처리장	250	346	증 96	송라면 화진리 산3-1→2-5	346	
변경	③ 녹 지	71,888	55,875	감 16,013		55,875	
신설	③-1 녹 지1		5,199	증 5,199	송라면 화진리 산2-5	5,199	
신설	③-2 녹 지2		27,482	증 27,482	송라면 화진리 산2-5	27,482	
신설	③-3 녹 지3		9,527	증 9,527	송라면 화진리 산3-29	9,527	
신설	③-4 녹 지4		13,667	증 13,667	송라면 화진리 산3-29	13,667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기 정]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객실수	비고
계	41,561	6,624	31,148	15.94	74.93			
유흥시설	27,300	1,000	2,400	2.41	5.77	지상2층		
숙박(A형)	3,998	1,000	5,000	2.41	12.03	지상10층 지하1층	51실	
숙박(B형)	1,725	1,000	4,020	2.41	9.67	지상5층		
숙박(C형)	559	260	250	0.60	0.60	지상2층	1실	
숙박(D형)	142	80	592	0.19	1.42	지상2층		
숙박(E형)	1,213	600	1,485	1.44	3.57	지상3층		
숙박(F형)	6,624	2,684	17,401	6.45	41.87	지상8층 지하2층	119실	

[변 경]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용적율	층수	객실수	비고	
계	66,675	17,000.66	32,895.94	40%이하 (25.5%)	100%이하 (49.4%)				
휴양·문화시설	소계	17,210	2,700.00	(15.7%)	(15.7%)				
	식물원	17,210	2,700.00			2,700.00	지상1층		
숙박시설	소계	42,014	11,573.42	24,787.52	(27.6%)	(59.0%)	150실		
	숙박(A)형	4,081	777.82	4,675.94			지상10층 지하1층	51실	
	숙박(B)형	7,611	2,760.00	3,140.88			지상2층	12실	
	숙박(C)형	2,462	920.00	960.48			지상2층	6실	
	숙박(D)형	2,215	500.00	814.50			지상2층	5실	
	숙박(E)형	7,128	1,480.00	5,731.20			지상4층	32실	
	숙박(F)형	10,422	2,420.00	4,440.00			지상2층	20실	
	숙박(G)형	3,974	1,215.60	2,469.00			지상3층	12실	
숙박(H)형	4,121	1,500.00	2,555.52	지상2층	12실				
편의시설	소계	7,451	2,727.24	5,408.42	(36.6%)	(72.6%)			
	편의시설1	3,115	1,026.06	1,026.06			지상1층		
	편의시설2	4,240	1,681.18	4,362.36			지상2층 지하1층		
	관리실1	50	10	10			지상1층		
	관리실2	46	10	10			지상1층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폐지	①-1 유희시설	송라면 화진리 산3-1일원	용 도	유희시설 (관리, 편의시설등 유희시설 부대시설)	
신설	①-1 휴양·문화시설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식물원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2,700.00㎡/17,210㎡)	
			용적율	100%이하 (2,700.00㎡/17,210㎡)	
			높 이	지상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기정	①-3-1 숙박(A)형	송라면 화진리 산2-2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51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000㎡/41,561㎡)	
			용적율	100%이하 (5,000㎡/41,561㎡)	
			높 이	지상10층, 지하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변경	①-3-1 숙박(A)형	송라면 화진리 산2-5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777.82㎡/42,014㎡)	
			용적율	100%이하 (4,675.94㎡/42,014㎡)	
			높 이	지상10층, 지하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폐지	①-3-2 숙박(B)형	송라면 화진리 산3-1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①-3-2 숙박(B)형	송라면 화진리 산2-5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2,760.00㎡/42,014㎡)	
			용적율	100%이하 (3,140.88㎡/42,014㎡)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폐지	①-3-3 숙박(C)형	송라면 화진리 산2-2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빌리지형1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260㎡/41,561㎡)	
			용적율	100%이하 (250㎡/41,561㎡)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신설	①-3-3 숙박(C)형	송라면 화진리 산2-5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920.00㎡/42,014㎡)	
			용적율	100%이하 (960.48㎡/42,014㎡)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폐지	①-3-4 숙박(D)형	송라면 화진리 산3-1일원	용 도	숙박시설 (방갈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3-4 숙박(D)형	송라면 화진리 산2-5 산3-3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500.00㎡/42,014㎡)	
			용적율	100%이하 (814.50㎡/42,014㎡)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폐지	㉠-3-5 숙박(E)형	송라면 화진리 산3-1일원	용 도	숙박시설 (산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신설	㉠-3-5 숙박(E)형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480.00㎡/42,014㎡)	
			용적율	100%이하 (5,731.20㎡/42,014㎡)	
			높 이	지상4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폐지	㉠-3-6 숙박(F)형	송라면 화진리 산3-1일원	용 도	숙박시설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신설	㉠-3-6 숙박(F)형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2,420.00㎡/42,014㎡)	
			용적율	100%이하 (4,440.00㎡/42,014㎡)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3-7 숙박(G)형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215.60㎡/42,014㎡)	
			용적율	100%이하 (2,469.00㎡/42,014㎡)	
			높 이	지상3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신설	□-3-8 숙박(H)형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숙박시설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500.00㎡/42,014㎡)	
			용적율	100%이하 (2,555.52㎡/42,014㎡)	
			높 이	지상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신설	□-4-1 편의시설1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관리실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026.06㎡/7,451㎡)	
			용적율	100%이하 (1,026.06㎡/7,451㎡)	
			높 이	지상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①-4-2 편의시설2	송라면 화진리 산3-29일원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681.18㎡/7,451㎡)	
			용적율	100%이하 (4,362.36㎡/7,451㎡)	
			높 이	지상2층, 지하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신설	①-4-3 관리실1	송라면 화진리 산2-5일원	용 도	관리실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0.00㎡/7,451㎡)	
			용적율	100%이하 (10.00㎡/7,451㎡)	
			높 이	지상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신설	①-4-4 관리실2	송라면 화진리 산2-5일원	용 도	관리실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이하 (10.00㎡/7,451㎡)	
			용적율	100%이하 (10.00㎡/7,451㎡)	
			높 이	지상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8	동해리조트	A=147,910㎡ → 151,858㎡ (증 3,948)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발계획을 재수립한 결과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함.

5. 도로시설 결정 조서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송라 1	2	10	국지 도로	345	소로1-1 송라면 화진리 산3-25	소로2-1 송라면 화진리 산2-5	일반 도로	-	-	기존도로 확폭
신설	소로	송라 2	1	8	국지 도로	679	소로1-2 송라면 화진리 산2-5	소로2-2 송라면 화진리 산2-2	일반 도로	-	-	기존도로 정비
신설	소로	송라 2	2	8	국지 도로	184	소로2-1 송라면 화진리 산2-2	지구단위구역계 송라면 화진리 산2-2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체육시설)

■ 도로시설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송라 소로1류2호선	노선신설 L=345m B= 10m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진출입도로와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함.
-	송라 소로2류1호선	노선신설 L=679m B= 8m	
-	송라 소로2류2호선	노선신설 L=184m B= 8m	

6.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체육시설	포항골프장 (회원제18홀 +대중제9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화진리 방석리 일원	1,349,089	감 14,737	1,334,352	경북고시 제 2006-328호 (2006.10.19)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	체육시설	A=1,349,089 →1,334,352㎡ (감14,73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로시설(소로 1-2호선,소로2-1호선)에 편입되는 부분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97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20-15번지 일원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1월 11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연구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연구시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포항분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20-15번지 일원	76,305	증)461	76,766	포항시 고시 제2010-17호 (2010.3.16)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연구시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포항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 면적 변경 기정 : 76,305㎡ 변경 : 76,766㎡ (증 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및 지번 등록 변경 (전환)으로 인하여 연구시설 면적 증가

나.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연1	15	국지 도로	74	중1-58 성곡리 산31	홍해읍 성곡리 산18	일반 도로	포항시 고시 제 2010-17호 (2010.3.16)	
변경	중로	2	연1	15	국지 도로	74	중1-58 성곡리 산31	홍해읍 성곡리 220-14	일반 도로	포항시 고시 제 2010-17호 (2010.3.16)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연1	중로 2-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지번 등록 변경(전환) 산18→2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및 도로 중점의 지번 등록전환

3.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9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시설 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

포항시장 박승호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23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등)
 - 명칭 : 포항 용산지구 주택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19번지 금정빌딩 4층
 - 성명 : 허 유
- 4. 사업계획 내용

가. 도로

노 선 명 (연장,폭)	시 점	종 점
대로3-18호선(L=628m, B=25m)	오천문덕1188-611	오천용산360-74
소로2-8호선 (L=95m, B=8m)	오천문덕161-190	오천문덕161-128
소로2-12호선(L=57m, B=8m)	오천문덕161-140	오천문덕161-158
소로1-4호선(L=169m, B=10m)	오천문덕152-14	오천문덕1188-238
중로2-오1호선(L=320m, B=15m)	오천문덕1188-236	오천문덕161-75
중로2-27호선(L=1,300m, B=15m)	오천문덕152-1	오천용산109-5
중로2-오5호선(L=58m, B=15m)	오천문덕산107-10	오천문덕1188-636
중로2-오2호선(L=210m, B=15m)	오천문덕1188-505	오천문덕산152-7
중로2-오3호선(L=156m, B=15m)	오천문덕산111-7	오천문덕1188-487
중로2-오4호선(L=189m, B=15m)	오천문덕1188-1	오천용산30-2
중로1-오1호선(L=280m, B=20m)	오천용산360-13	오천용산41-1

나. 소하천

- 소하천(용산천) L=528m, B=7m - 오천용산45-5~오천문덕1188-1

다. 공원

- 어린이공원(1-1부지) A=5,100㎡ - 오천문덕 161-179일원
- 어린이공원(5-2부지) A=2,040㎡ - 오천용산 360-11일원
- 어린이공원(7-2부지) A=1,520㎡ - 오천용산 360-12일원
- 소공원(7-3부지) A=6,000㎡ - 오천용산 66-2일원

라. 녹지

- 완충녹지 A=7,300㎡ - 오천용산300-2일원

마. 주차장

- 주차장(7-4부지) A=2,000㎡ - 오천용산111-13일원

바. 학교

- 중학교(3-1부지) A=11,491㎡ - 오천문덕152-4일원
- 고등학교(3-2부지) A=14,740㎡ - 오천문덕1188-239일원
- 초등학교(5-1부지) A=13,200㎡ - 오천문덕1188-611일원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용산리

【대로3-18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313,361	16,681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611	천	13,100	20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2	"	1188-1	천	184,309	2,527		국(건교부)				
3	"	1188- 243	천	4,152	2,51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13	천	28,208	6,08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5	"	360-4	천	81,185	2,943		국(건교부)				
6	"	360-74	답	2,407	2,407	서순경	포항시 여천동88				

【소로2-8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2,903	791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235	천	154	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2	"	161-179	잡	754	1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3	"	161-190	잡	579	57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	"	161-176	잡	41	13		국(재경부)				
5	"	161-27	전	294	99		국(산림청)				
6	"	161-28	천	115	41		일화산업주식회사				
7	"	161-140	천	130	40		국(건교부)				
8	"	161-180	잡	836	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소로2-12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1,820	497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61-140	천	130	28		국(건교부)				
2	"	161-152	전	81	66		경상북도				
3	"	161-69	전	119	23		국(재경부)				
4	"	161-151	천	356	257		국(산림청)				
5	"	159-3	전	66	11		국(국방부)				
6	"	161-149	천	42	9		국(산림청)				
7	"	161-150	천	15	8		국(산림청)				
8	"	161-158	구	36	28		국(농림부)				
9	"	161-157	구	10	5		국(농림부)				
10	"	161-71	천	597	5		국(산림청)				
11	"	161-147	천	326	50		국(산림청)				
12	"	161-146	천	42	7		국(산림청)				

【소로1-4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25,694	1,749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635	천	326	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2	"	1188- 636	천	521	3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3	"	1188- 241	천	5448	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	"	152-4	천	1187	22		국(재경부)				
5		152-13	잡	10	1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6		152-14	잡	127	127		포항시				
7		152-5	잡	65	1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8		152-7	임	477	191		국(재경부)				
9		152-6	임	1025	126		국(재경부)				
10		152-12	임	26	26		국(재경부)				
11		152-8	임	747	210		국(재경부)				
12		1188-23 9	천	1,374	444		국(건교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필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3		산14	임	788	19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4		1188-24 2	대	11,75 8	113	(주)성우 주택	북구 대흥동 618-27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15		1188-23 8	천	1415	206		국(건교부)				
16		90-10	잡	400	25		국(국방부)				

【중로2-오1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71,146	5,417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236	천	30,597	92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61-181	잡	3,439	75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161-71	천	597	379		국(산림청)				
4	"	161-147	천	326	271		국(산림청)				
5	"	161-146	천	42	20		국(산림청)				
6	"	161-73	잡	293	82		국(재경부)				
7	"	161-166	잡	150	5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161-148	잡	415	415		국(재경부)				
9	"	161-72	도	374	109		국(산림청)				
10	"	161-167	잡	107	107		국(재경부)				
11	"	161-128	대	301	5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2	"	161-31	잡	381	143	김영학	해동동 79-25	오천농업 협동조합	포항시 남구 해 도동 79-25	지상권 근저당	
13	"	161-142	잡	490	485		국(국방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4	"	161-183	잡	61	22		국(국방부)				
15	"	161-67	잡	19	17		국(국방부)				
16	"	161-145	잡	150	150		국(국방부)				
17	"	1188-23 6	천	30,59 7	17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8	"	161-66	도	357	276		국(산림청)				
19	"	1188-43 9	천	709	709		경상북도				
20	"	161-74	도	162	143		국(산림청)				
21	"	161-75	잡	83	73		국(국방부)				
22	"	153-4	답	263	3		경상북도				
23	"	153-2	도	228	10	이종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33-14				
24	"	161-168	대	59	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5	"	161-141	잡	946	33		국(국방부)				

【중로2-27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180,365	21,054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236	천	30,597	1,95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2	"	152-1	잡	13,150	1,360		국(재경부)				
3	"	153-3	답	2,279	25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	"	161-75	잡	83	10		국(국방부)				
5	"	161-74	도	162	6		국(산림청)				
6	"	153-4	답	263	260		경상북도				
7	"	153-2	도	228	218	이종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33-14				
8	"	154	잡	14,483	40		국(국방부)				
9	"	1187-3	도	17,441	128		국(건교부)				
10	"	90-8	잡	15,388	40		국(국방부)				
11	"	104-5	전	119	119		국(국방부)				
12	"	104-6	전	470	52		국(국방부)				
13	"	104-7	전	482	419		국(국방부)				
14	"	104-2	도	1,372	590		국(국방부)				
15	"	90-198	잡	185	150		국(국방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16	"	90-9	도	407	407		국(국방부)				
17	"	산12-4	임	493	262	월성이씨 익제공파 (이송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94				
18	"	산12-8	임	300	300		경상북도				
19	"	0-4가	임	59	37		경상북도				
20	"	90-12	전	187	116	이용우	영일군 오천읍 구정동 251				
21	"	90-199	전	38	38		경상북도				
22	"	90-11	도	618	580	김향이	영일군 오천면 용산동 산6				
23	"	90-197	답	135	1		경상북도				
24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490	잡	19	19	손외자	북구 상원동 468-31				
25	"	산12-3	도	793	667		영일군농회				
26	"	1188- 451	잡	797	791		경상북도				
27	"	1188- 501	잡	3,803	171	(주)성우 주택	북구 대흥동 618-27	(주)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28	"	0-5가	도	1,817	1,697		국(건교부)				
29	"	1188- 611	천	13,100	4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30	"	1188- 450	천	51	51		경상북도				
3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산2-2	도	496	496	심능삭	연일면 오천동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32	"	산2-7	임	1,032	350		경상북도				
33	"	29-1	잡	215	173		경상북도				
34	"	362	도	1,438	416		국(건교부)				
35	"	산2-11	임	363	257		경상북도				
36	"	산6-4	임	481	325		경상북도				
37	"	30-2	대	185	10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38	"	30-3	대	60	60		경상북도				
39	"	30-1	도	30	30	이영석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31				
40	"	산5-1	임	323	163		경상북도				
41	"	36-6	전	5	5		경상북도				
42	"	36-7	전	74	74		경상북도				
43	"	산4	임	99	79	박덕수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47				
44	"	36-2	도	43	43	이상기	용산동				
45	"	36	전	12,424	54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6	"	35-4	전	17	1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7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5-8	전	33	33		경상북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48	"	35-3	도	198	8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49	"	35-9	전	127	127		경상북도				
50	"	35-5	도	321	240	이재혁	영일군 영일읍 증명동 638				
51	"	37-5	전	9	9		경상북도				
52	"	38-19	전	29	29		경상북도				
53	"	38-2	도	598	593	김익술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131				
54	"	38-18	전	2	2		경상북도				
55	"	38-17	전	7	7		경상북도				
56	"	363	구	3,679	333		국(농림부)				
57	"	42-3	도	483	368	김상봉외 1인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56				
58	"	42-7	전	117	117		경상북도				
59	"	43-2	도	410	331		국(건교부)				
60	"	43-6	전	64	64		경상북도				
61	"	41-1	전	8,221	50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62	"	44-7	전	31	31		경상북도				
63	"	44-2	도	195	183	김낙구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12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64	"	44-5	대	466	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5	"	45-4	대	235	15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6	"	45-5	대	251	4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7	"	45-6	대	66	4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8	"	45-3	도	592	558	김효영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138				
69	"	360-12	천	12,734	285		국(건교부)				
70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64-2	전	23	23	김무생	용산리				
71	"	66-3	도	301	301	김삼달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56				
72	"	66-6	대	588	20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3	"	66-2	대	291	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4	"	365	도	4,592	61		국(건교부)				
75	"	115-3	전	172	11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6	"	115-2	도	301	292	김문영	영일군 오천면 용산동 66				
77	"	114-4	대	417	16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8	"	114-3	도	281	258	이말순	포항시 대신동 68-7				
79	"	111-4	대	494	15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80	"	111-3	도	205	188		경상북도				
81	"	111-2	도	36	36		경상북도				
82	"	111-9	도	647	3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83	"	109-3	도	413	360	김종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70				
84	"	109-7	전	86	86		경상북도				
85	"	109-4	전	659	20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86	"	109-8	전	80	33		경상북도				
87	"	109-5	도	235	134	이재우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130				
88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산12-11	임	576	15		국(건교부)				
89	"	산15-8	임	41	6		경상북도				
90	"	산15-10	도	109	22		포항시				
91	"	산15-9	임	216	70		경상북도				
92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29	잡	413	2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93	"	38-20	전	25	17		국(건교부)				
94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23 8	천	1,415	138		국(건교부)				
95	"	1188-48 7	잡	1,577	1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법일동 830-38	근저당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96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8-28	전	261	5		국(건교부)				
97	"	38-29	수	46	1		포항시				
98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0-3가	임	393	4	허유	경상북도				

【중로2-오5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9,522	869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07-9	임	43	3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07-10	임	71	7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107-2	임	1,253	2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1188-63 5	천	326	17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1188-63 6	천	521	48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	"	1188-24 1	천	5,448	7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1188-24 0	천	1860	7		국(건설부)				

【중로2-오2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24,408	3,179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611	천	13,100	3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188- 505	잡	697	697	최정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동현대아파트 103동 602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지상권 근저당	
3	"	1188- 501	잡	3,803	1,506	(주)성우 주택	북구 대흥동 618-27	(주)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	"	1188- 637	잡	64	64	(주)성우 주택	북구 대흥동 618-27				
5	"	1188- 504	잡	309	309	최정필	대잠동 현대아파트 107동 1103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지상권 근저당	
6	"	1188- 241	천	5,448	24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152-7	임	477	285		국(재경부)				
8	"	152-5	잡	65	3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	1188- 610	천	445	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중로2-오3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21,084	2,510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1-3	임	2,604	16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188- 611	천	13,100	1,13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1188- 501	잡	3,803	721	(주)성우 주택	북구 대흥동 618-27	(주)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	"	1188- 487	잡	1,577	48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중로2-오4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232,335	3,932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1	천	184,309	729		국(건교부)				
2	"	1188-61 1	천	13,100	5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12	천	12,734	442		국(건교부)				
4	"	360-11	천	8,106	1,28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362	도	1,438	200		국(건교부)				
6	"	36	전	12,424	1,11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36-4	전	39	29		경상북도				
8	"	30-2	대	185	8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중로1-오1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103,121	6,60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13	천	28,208	1,72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74	잡	18,875	46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75	천	1,207	38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365	도	4,592	103		국(건교부)				
5	"	67	전	28,818	2,23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	"	360-12	천	12,734	680		국(건교부)				
7	"	41-1	전	8,221	98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44-5	대	466	2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용산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268,358	8,537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188- 243	천	4,152	13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188-1	천	184,3 09	378		국(건교부)				
3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12	천	12,73 4	2,043		국(건교부)				
4	"	360-11	천	8,106	37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362	도	1,438	84		국(건교부)				
6	"	36-4	전	39	10		경상북도				
7	"	36	전	12,42 4	2,90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363	구	1,460	300		국(농림부)				
9	"	41-1	전	8,221	1,64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0	"	44-5	대	466	29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1	"	45-4	대	235	7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2	"	45-5	대	251	20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3	"	45-6	대	66	2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4	"	67	전	28,81 8	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5	"	66-6	대	588	3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6	"	360-14	천	5,051	3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부지1-1】 공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38,572	5,100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61-179	잡	754	73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61-180	잡	836	83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161-181	잡	3,439	1,86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161-176	잡	41	6	국(재경부)					
5	"	161-27	전	294	94	국(산림청)					
6	"	161-28	천	115	55	일화산업					
7	"	161-140	천	130	13	국(건교부)					
8	"	1188-23 5	천	154	15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	1188-60 4	천	217	217	국(건교부)					
10	"	161-90	천	607	607	국(산림청)					
11	"	161-151	천	356	99	국(산림청)					
12	"	161-89	구	73	73	국(농림부)					
13	"	161-158	구	36	8	국(농림부)					
14	"	161-147	천	326	5	국(산림청)					
15	"	1188-23 6	천	30,597	23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6	"	161-71	천	597	108	국(산림청)					

【부지5-2】 공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10,172	2,04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11	천	8,106	1,82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29	잡	413	20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29-1	잡	215	6	경상북도					
4	"	362	도	1,438	12	국(건교 부)					

【부지7-2】 공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50,239	1,52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67	전	28,818	45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360-12	천	12,734	807	국(건교 부)					
3	"	41-1	전	8,221	11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44-5	대	466	14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부지7-3】 공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68,625	6,00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67	전	28,818	3,42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360-12	천	12,734	519	국(건교 부)					
3	"	66-6	대	588	35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66-2	대	291	282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365	도	4,592	161	국(건교 부)					
6		84	대	291	29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83	전	20,163	45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85-2	전	245	19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115-3	전	172	6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0		114-4	대	417	23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1		114-2	대	314	2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 녹 지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 내용	
합 계				55,165	7,30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360-7	답	4,303	61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360-26	천	500	236	국(건교 부)					
3	"	74	잡	18,875	86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303	전	1,941	34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365	도	4,592	192	국(건교 부)					
6	"	300-2	잡	629	49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83	전	20,163	2,27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110	전	2,012	1,25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	111-9	도	647	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0	"	111-10	전	844	66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1	"	109-4	전	659	348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부지7-4】 주차장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29,259	2,000						
1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	83	전	20,163	36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85-2	전	245	4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365	도	4,592	92	국(건교 부)					
4	"	114-2	대	314	29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114-4	대	417	20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6	"	111-12	도	39	1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111-17	도	7	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111-6	대	368	3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	111-14	대	309	30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0	"	111-13	대	161	16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1	"	111-4	대	494	339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2	"	111-9	도	647	175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3	"	111-10	전	844	10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14	"	109-4	전	659	3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부지3-1】 학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50,271	11,491						
1	포항시 오천읍 문턱리	1188- 236	천	30,597	1,85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2	"	152-1	잡	13,150	4,480	국(재경부)					
3	"	152-2	임	1,276	972	국(재경부)					
4	"	107-4	임	60	60	국(건교부)					
5	"	1188- 240	천	1,860	1,853	국(건교부)					
6	"	107-9	임	43	11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7	"	1188- 635	천	326	15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8	"	152-4	천	1,187	1,165	국(재경부)					
9	"	152-6	임	1,025	896	국(재경부)					
10	"	152-8	임	747	47	국(재경부)					

【부지3-2】 학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58,763	14,740						
1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152-2	임	1,276	304	국(재경부)					
2	"	1188- 236	천	30,597	7,673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3	"	153-3	답	2,279	2,026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4	"	152-3	임	284	284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5	"	152-6	임	1,025	3	국(재경부)					
6	"	152-8	임	747	490	국(재경부)					
7	"	1188- 239	천	1,374	930	국(건교부)					
8	"	산14	임	788	597	허유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근저당	
9	"	1188- 238	천	1,415	751	국(건교부)					
10	"	1187-3	도	17,441	791	국(건교부)					
11	"	104-6	전	470	418	국(국방부)					
12	"	104-7	전	482	63	국(국방부)					
13	"	90-10	잡	400	375	국(국방부)					
14	"	90-198	잡	185	35	국(국방부)					